

Q & A

Korean Fire Protection Association

Q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 사무실 중간에 방화셔터 및 내화벽으로 방화구획 시 액세스플로어(Access Floor) 하부의 개구부에도 시멘트몰탈, 내화 충전재 등으로 마감을 하여야 하는지요?

A 문의하신 시설은 건축법시행령 제46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한 면적별 방화구획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무실 중간에 방화셔터 및 내화벽으로 방화구획을 하는 경우, 액세스플로어 하부 방화구획 선상에도 내화재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Q 화재안전기준에 보면 정격토출량의 150%, 정격토출압력의 140% 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펌프의 정격토출압력 및 토출량이 150%, 140%가 되어도 펌프에 이상이 없는지요?

A 소화펌프는 일반 공업용 펌프와 달리 방사량이 매우 가변적이므로 정격 토출량에서 규정방사량을 유지하면서도, 방사량이 정격점보다 지나치게 적을 경우와 방사량이 정격점을 초과할 경우 양정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강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NFSC 102 제6조 7항의 조건은 소방펌프에 대해 다양한 유량변동에 따라,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감소하지 않도록 별도의 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체절운전 시 펌프의 양정은 정격 양정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정격 토출량의 150%를 방사할 경우에도 토출압력은 정격 양정의 6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Q 조립식판넬 구조의 창고를 임대하여 원단 판매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3개월이 지났는데 부동산인 건물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나오고 동산인 원단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사건은 원인 미상으로 종결되었고 원단도 완전 전소되어 폐기물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담당 손해사정인은 제가 제출한 서류에서 동산인 원단재고는 60%만 인정되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가도 형편없이 낮게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원단을 구매한 곳에서 판매사실 확인원까지 받아다 왔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당시엔 사진 첨부까지 다 해놓고 전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입하신 화재보험 약관에 보시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분쟁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층간방화구획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서, 면적은 지하 1층 500㎡, 지상 1층 630㎡, 지상 2층 605㎡, 지상 3층 605㎡, 지상 4층 630㎡, 지상 5층 650㎡입니다. 승강기는 계단참 한 곳에 같이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층간 방화구획을 위해 각층의 계단실 끝부분에 방화셔터를 설치하여 각층의 실과 계단실(승강기 포함)을 방화셔터로 구획할 계획입니다. 층간 방화구획을 하기 위해 지상 각층의 계단실 끝부분에 방화셔터를 설치할 때 지하층에도 방화셔터 설치가 필요한지요?

1층에 방화셔터를 설치하면 지하 1층과 구획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지하층의 계단실에도 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강기부분에 층간 방화구획이 안되어서 방화셔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지하층 계단실이 아닌 승강기의 홀 바로 앞에 방화셔터를 하면 지하 1~지상 5층의 승강기와 지하층의 방화구획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요?

A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 2호에는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과 제9조 1항에서 "건축물의 5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물에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처럼 지하 1층의 층별 방화구획은 지상 1층과 방화구획이 되어 있다면 별도로 구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각 층의 계단실이 층별로 구획되어 있다면 방화셔터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나,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국가화재안전기준에는 성능시험 배관에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준이 제정되기 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의 경우 유량조절밸브가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본 기준의 시행 시점은 언제인지요?

A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시험배관에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하도록 한 시점은 행정자치부고시 제 2004-6호 화재안전기준(제정 2004.6.4)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Q KS F2805 관련 흡음계수 측정시험 시 그라스울과 그라스크로스 마감처리 된 그라스울과의 흡음계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그라스울의 흡음계수가 그라스크로스를 마감한 그라스울 보다 고주파수 대역에서 높은 것은 사실이나, 정확한 상관계수는 성립하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울러, 그라스울의 흡음계수 측정 시 제조사별, 제조배합 및 함수율 등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나타나며, 그라스크로스를 마감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또한, 동일한 재질 및 동일한 두께의 그라스울에 그라스크로스를 마감한 경우라도 그라스크로스의 두께, 밀도 및 개구율에 따라 흡음계수는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제반 측정조건 등을 동일하게 관리하면서 수많은 실험을 통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